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송아량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자로 인한 공공자전거 또는 관련 시설물의 도난, 분실, 파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해당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